

大學의 自治와 自律的 評價

金 玉 煥

(世宗大 教育學科 教授)

I. 學問의 自由

大學의 自治와 學問의 自由는 대학이 바라는 最高의 理想이다. 대학의 起源인 中世 大學의 성격이 이터한 精神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두 정신은 대학이 지향하는 本鄉이기도 하다. 自生的으로 발생한 중세 대학은 그 運營과 學位 授與의 권한을 외부의 간섭 없이 모두 대학이 自治的으로 행하였다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中世 대학 가운데 특히 自然發生的인 형태로 성립 된 最古의 大學인 Sarerno, Bologna, Paris 大學들을 비롯한 14개의 대학은 大學의 自治와 學問의 自由의 발상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터한 傳統과 慣習이 불과 50년이 못 되어 대학은 政治와 宗敎의 눈독을 맞게 된다. Friedrich 2세가 설립한 Napoli 大學(1224년)과 Gregory 9세가 설립한 Tours 大學(1229년)이 그 것이다. 이 후 大學은 皇帝나 教皇 또는 國王이 자기 권력과 権威를 유지하려는 커다란 방편으로 삼아, 인위적이고 정체적인 統制와 關心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特許狀(Stiftungsbrief), 教書(Bulla), 認許狀(Royal Charter) 등의 設立認可 制度를 두어 대학을 통제하게 된다.

이 후 대학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宗敎와 政

治의 권력에 의하여 干涉을 받아 왔다. 이럴 때마다 대학은 學問의 自由와 大學의 自治를 堡壘로 삼아 맞서 오기도 하였다. 어떻게 보면 대학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종교의 권위와 정치적 권력에 맞서 대항하는 學問의 自由와 大學의 自治를 수호하는 갈등 속에서 發展하여 왔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는 그만큼 대학이 宗敎의 권위 유지와 教勢의 확장 그리고 위정자들의 정권 유지를 좌우할 만큼 강력한 힘 즉 知識과 眞理를 창조하는 곳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치와 종교는 비단 대학뿐만 아니라 眞理를 생산하는 곳에는 늘 감시와 통제를 하여 왔다. 焚書坑儒나 Galileo의 宗敎裁判 또는 Darwin의 進化論 등이 그 代表的 例라 할 수 있다. 이들은 大學外에서 학문의 자유를 抑壓한 예라 할 수 있으나, 大學內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를 억압한 대표적인 例는 18세기 啓蒙主義 사조를 업고 18세기 초(1721년)에 C. Wolff가 理性主義의 강연으로 인하여 19년 동안 Halle 大學에서 추방되었던 사건과 18세기 말(1793년)에 일어났던 I. Kant의 理性과 宗敎에 관한 研究論文이 정권의 制止로 출간되지 못한 사건, 19세기에 이르러 Göttingen 大學에 있어서 F.C. Dahlmann 교수를 비롯한 7인 교수(Göttinger Sieben)의 추방사건 등은 近世 大學에 있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학문의 자유를 억압한 큰 사건들이다. 이 사건

들을 계기로 하여 이 후 學問의 自由는 大學社會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美國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를 억압한 사건도 Harvard大學의 초대 총장이었던 Henry Dunster의 총장직 해임, South Carolina大學의 총장이었던 Thomas Cooper의 해임, 美國 大學教授協會(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를 조직하는 계기가 된 Stanford大學의 경제학 교수였던 E.A. Ross의 사건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최근 日本 東京大學에 있어서의 「뽀뽀로」 사건 등은 모두 대학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와 관련된 큰 사건들이다.

이와 같은 침해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가 늘 주장되어 왔던 까닭은 대학이 本質的으로 眞理를 탐구하는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眞理探究는 학문의 자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에는 絶對的인 自由가 따른다. 이때 자유는 放縱과 衝動的選擇이 아니라 고독한 思考를 통한 참다운 知識을 바탕으로 하여 眞理를 탐구하는 根本이 되므로, 학문의 자유에 대한 투쟁은 大學의 宿命이다. 만약 이때 宗教的 權威나 政治的 權力이 침해를 한다면 탐구의 自由는 歪曲되어 眞理의 生產이 어렵게 된다.

學問의 自由(academic freedom)는 政治的, 權威的, 宗教的 또는 이데올로기的 行爲上の 自由(liberty)와 구별된다. 前者は 탐구적이고 창조적인 사고에 의한 絶對的 自由精神의 발로임에 비하여, 後자는 집단사회에 있어서 정치와 종교와 권위간에 있어서 힘의 배분상의 相對的 自由이므로, 이는 구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학문의 자유는 確實性 있는 原理나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에는 內的 精神으로부터 神의 理念(die göttliche Idee)의 형태로 발현되는 孤獨한 絶對 自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에 대한 精神的인 침해는 探究精神의 本質인 自由에 대한 침해이므로 眞理는 脫化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自由는 진리에 이르는 길이며 道具이고 眞理는 自由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大學史上 學問의 自由를 대학의 생명처럼 수호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探究·自由·眞理는 三位一體의 관계에서 학문의 자유를 지키고 있으며, 대학을 발전시키는

大學의 垂直的 理念(vertical idea of university)으로 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II. 大學의 自治

大學의 自治는 이상에서 논한 學問의 自由를 본질로 한다.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前提이면서도 학문의 자유를 원천으로 한다. 그렇지 않는 한 대학의 자치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학의 자치는 政治的統治가 아니라 眞理의 法則(canons of truth)에 따라야 하는 學問의法人體(academic corporation)이기 때문이다. 研究理念의 實現 없이는 대학의 참다운 自治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대학의 자치는 民主主義國家의 학문적 공동사회(academic community)에 있어서 꼭 실현되어야 할 最高의 象徵이다.

어떤 학자는 대학자치의 타당한 근거를 대학의 기원인 中世 大學 아래의 전통과 관습에서 찾기도 하나, 그보다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자유에 따른 누적된 研究理念의 실현과 知性의集合인 民主主義의 原理에서 찾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歷史가 짧고, 學問의 自由와 民主主義의 價値를 소홀히 하는 대학은 대학의 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 學問의 自由, 眞理探究에 의한 研究理念의 實現, 民主主義의 原理는 대학자치의 기반이 된다. 이와 같은 기반이 없는 大學自治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戰後 日本 東京大學의 紛爭과 Oriental University閉鎖는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하겠다. 기반이 없는 대학자치는 언제나 外勢의 침해를 받기 쉽다.

대학이 自治權을 얻었다 함은 하나의 學問의共同社會에 대한 독립권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學位授與權, 財政權, 教授任命權, 入學과 卒業, 研究와 教授內容, 出版權, 議員選出派送權, 他 大學(university college)과의 契約와 學位授與權 등에 걸친 일련의 大學의 自由를 뜻한다. 이는 대학의 권위를 말하는 것으로 學生의 質的 水準과 함께 教授의 研究를 통한 知性의 發露이다. 대학의 자치라는 명목으로 행하여지는 學位의 商標化와 學區의 不條理는 대학의 자

치와 대학의 권위를 상실케 할 뿐 아니라 自滅을 초래한다. 위에서 말한 Oriental University의 폐쇄는 이에 해당하는 보기였다. 만용된 대학자치는 대학을 個人的이고 私的인 所有物로 생각하기 쉬우며 그것을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自由精神에서 얻는 真理의 法則에 따라야 한다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대학의 자치의 水準은 위에서 말한 學問의 自由, 真理探究에 의한 研究理念의 實現, 民主主義哲學의 三大原理의 폭에 相應한 대학의 자치를 計有할 수 있는 것 이지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여기에 대학자치의 限界와 獨自性이 있는 것이다.

대학의 發達史上 보아 대학의 자치를 典型的 으로 실시하는 데는 英國의 大學이다. 英國의 大學自治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古典的 大學인 Oxbridge 이후 近世大學인 Civic University나 New University의 大學群에 이르기까지 대학에 認許狀(Royal Charter)을 下賜함으로 大學을 認可하는 동시에 自治權이 수여된다. 認許狀은 國王이 직접 來校하여 下賜式에서 내리는 것으로, 대학 最高의 권위이며 公認하는 象徵이다. 대학의 인가를 國王이 직접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학에 대한 신뢰와 自立自學할 수 있는 대학자치의 資質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制度는 中世 大學에서부터 國王이나 教皇이 보유하고 있던 大學設立의 認可權을 계승한 慣習으로 그 전통에 벼금할 만큼 威信이 대단하다.

그런데 이러한 認許狀의 特權이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1828년에 開學한 London 大學은 1836년에 와서 認許狀을 받아 自治權을 획득하였고, 1867년에 와서는 國會에 議員 한 명을 선출하여 派送할 수 있는 特權마저 얻었다. Sussex 大學의 경우에는 1911년에 University College로 출범하여 1961년에 와서야 認許狀이 交付된 예만 보더라도, 大學의 自治權을 얻기 위한 대학의 功績이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London 大學은 開校 8년만에, Sussex 大學은 開校 50년만에 認許狀을 획득한 것을 보아도 이에 대한 권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英國 大學에서 認許狀을 받은 대학의 特權이란 대학마다 약간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은 特權을 갖는다. ① 대학 스스로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學問領域을 정하여 教育과 研究를 행하여 학문의 발전과 보급에 힘쓰는 일 ② 학생의 入學條件를 설정하는 일 ③ 학생의 訓育(discipline)을 규정하는 일 ④ 學位를 수여하고 그 條件을 정하는 일 ⑤ 他大學의 卒業者와 大學人에게 學位를 수여하는 일 ⑥ diploma와 免許狀 등을 수여하는 일 ⑦ 名譽學位를 수여하는 일 ⑧ 수여한 學位나 diploma를 박탈하는 일 ⑨ 大學外의 사람들에게 教育의 開放을 하는 일 ⑩ 他大學에서 받은 시험과 학습기간의 認定 ⑪ 他大學과의 連繫 및 姉妹관계 ⑫ 教授職과 講師職의 유지 ⑬ fellowship과 scholarship의 유지 ⑭ 學生用 宿舍의 設立·維持·管理 ⑮ 研究成果의 出版 ⑯ 授業料의 징수 ⑰ 基金寄贈을 조치하는 일, ⑯ 教育·研究用 遺贈을 管財하는 일 ⑯ 起債과 그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는 일 등이다.

이와 같은 英國 大學의 자치는 바로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大學의 獨立」이라 할 수 있다. 教育과 研究團體의 特權인 대학자치의 폭은 世界 어느 나라에 비교하든 절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실제로 「學問社會의 立憲共和國」이라 할 만큼 英國 大學의 자치는 그 규모가 대단한 것으로 學問의 自由를 議定하는 大學自治의 典型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學問의 自由와 大學의 自治를 논할 때 마치 대학이 外勢의 침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大學의 權利와 特權이라는 애매하고 혼돈된 관념에 휩쓸려 그저 막연한 主張에 빠지기 쉬운데, 이는 대학사회에서 경계하여야 할 일이다. 특히 政治와 宗教社會에 있어서 힘의 配分上의 상대적인 自由인 liberty와는 엄연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이 探究精神을 바탕으로 真理探究의義務와 責任을 다할 때, 이는 절대적인 自由를 手段으로 하는 이상 學問의 自由와 大學의 自治는 자연적 韻結로, 대학이 누어야 할 宿命의 本質이다.

III. 大學의 自律的 評價

大學에 관한 評價는 대학의 價値化를 위한 촉

진적 역할을 한다. 이는 學問의 自由를 비롯하여 大學의 理念과 機能을 국대화하기 위한 手段으로 대학사회에서 불가결한 일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대학에 대한 評價도 中世 이래 오랜 전통을 갖고 발전하여 왔다. 認許狀의 내용에는 觀察權者(Visitor)에 관한 規定이 있어 皇帝나 國王이 적당한 時期의 方法으로 대학의 視察을 命하여 建物과 實驗室을 포함한 學問研究, 教育, 試驗實情 등에 걸친 일체의 大學運營에 관한 評價를 실시하였다.

認許狀을 교부함으로 大學에 대한 認許와 大學自治權에 대한 인정의 폭도 대단한 것이었지만 반면 訪問觀察評價(Visitation)의 權限도 대단한 것이었다. 1867년 Birmingham에 있는 Queen's College의 認許狀이 취소된 것이 그 예라 하겠다. 대개의 경우 觀察者는 大司教로서 가끔 대학자치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Harvard大學을 비롯한 美國 植民地 시대의 대부분의 대학은 國王의 觀察權에 의한 大學評價의 束縛을 두려워한 나머지 認許狀을 敬遠하여 대학의 認可制度 없이 自由放任 상태에서 마음대로 대학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美國 初期의 低質 大學 亂立의 큰 원인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植民地 時代의 美國 大學의 設立形態는 전통과 권위의 상징인 認許狀에 의한 대학설립 방식을 깨고, 「無許可 大學」의 설립방식을 취하여 大學史上 대학설립 방식의 새로운 유형을 낳게 하였다. 이는 中世의 대학설립 형태와도 달리, 學者들로 구성된 Guild 단체도 아닌 문외한들이 조직한 理事會나 宗教團體들이 합부로 대학을 설치한 것으로서, 이미 식민지 시대의 美國 大學은 英國風과는 달리 低質 大學의 亂立와 學位濫發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예로서 1830년대의 英·美의 大學을 비교한다면 英國은 認許狀에 의하여 설립된 권위 있는 대학이 세 개에 지나지 않았음에 비하여 美國은 이미 50개가 넘는 「無許可 大學」들이 난립하여 學位를 授與하고 있어, 식민지 시대의 美國의 大學相을 짐작케 한다.

美國의 이미 같은 大學 設立風은 오늘날의 전통이 되어 대학설립을 激增시켰으며, 세계에서

유례 없는 場的 成長으로 同一年齡層의 50%가 넘는 高等教育의 보편화 현상을 초래한 근원적 原因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公認된 대학만도 3,000개 이상에 1,000만명 이상의 대학생이 오늘의 美國 大學 캠퍼스를 누비고 있다. California大學의 教育社會學者인 Martin Trow는 이와 같은 自國의 大學發展相에 대하여, 유럽 大學은 最高의 대학이 아니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nothing if not the best)라는 생각에서 대학을 설립하는 데 비하여, 美國 大學의 설립은 좋은 대학은 못 되지만 없는 편보다 낫다(something is better than nothing)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다며 美國 大學의 質과 權威를 간결하게 表現함으로써 美國의 大學相을 總評하고 있다.

이와 같은 美國 대학의 발전 배경은 大學史上 독특한 大學 評價方式을 유도하게 되었다. 즉 Accreditation(大學 資質判定)方式의 발생이 그것이다. 이는 大學의 設立方式의 한 형태이자 대학의 自律的 評價方式의 하나이다. 權威와 自治를 상징한 Chartering 方式을 대학의 質的 向上의 方法이라 한다면, Accreditation 方式은 民主主義와 自由主義를 표방한 대학의 自律的 評價方式을 통한 대학의 質的 向上의 方式이라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大學設立의 認可方式인 동시에 대학의 質的 向上을 꾀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獨逸, 日本, 韓國을 중심한 政府統制의 대학설립 인가방식이 先認可 後設置의 단 1회적인 인가에서 그친다고 한다면, Accreditation 方式은 대학이 발견되는 과정에서 2년 내지 10년을 週期로 한 認可機能의 分散을 통한 계속적이며 누적적인 대학의 資質向上을 꾀한 인가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1969년부터 1975년까지의 6년간에 걸쳐 약 800개의 대학이 新設 난무하였는데 그 가운데 300개교가 폐쇄되었다는 것은 이 방법의 質的 管理를 위한 效率性을 짐작할 수 있다.

대학의 自律的 評價에 의한 이 Accreditation 方式은 19세기 말부터 胎動하기 시작하여 20세기 초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방식은 政府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大學을 비롯한 教育界에서 주도한 것으로, 自律의 으로 발생되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가까

이 있는 州의 대학들이 연합하여 이른바 6개 지역大學 資質 判定機構(Six Regional Accrediting Association)를 만들어 대학운영의 모든 면에 걸쳐 質的 水準을 평가하는 大學單位의 機關評價(Institutional Accreditation)를 하는 한편, 의학을 비롯한 전문분야에 관한 이른바 專門領域別 評價(Professional Field Accreditation)를 하고 있다. 美國이 教育의 中央集權的 統制機關인 文教省의 발전이 늦은 까닭도 이와 같은 自律的 評價機關이 先行發展하여 대학의 質을 管理하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미국의 대학평가는 정부가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연합하여 자율적 평가를 하고 있는 오랜 전통에, 文教省이 자율적 평가의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들어앉혀져 있을 따름이라고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韓國과 같이 政府統制에 의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제도라 할 수 있다. 확실히 美國 大學의 自律的 評價는 그 근본 사상이 民主主義 哲學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自律的 評價에도 제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制限點의 극복이 대학의 자율적 평가의 효율성을 기하는 관건이 된다. 자율적 평가의 제한점이란 “管理人の 管理를 누가 평가하느냐”(*quis custodiet ipsos custodes?*—Who takes custody of the custodians?)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즉 自律評價에는 평가의 대상이 평가자自身이라는 점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합하여 자기네의 대학을 평가하는 Accreditation 제도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놓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미국의 Accreditation 제도의 발전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다. 자기 자기 대학의 利害關係가 얹혀 있기 때문에 치리멸렬하게 自律的 評價 機構가 발달하였던 것이다.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AAU),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Universities(NASU), Association of Urban Universities(AUU), Joint Committee on Accrediting (JCA), National Commission on Accrediting (NCA) 등이 그 대표가 되는 기구였다. 이들은 모두 교섭단체 (collective bargaining)의 성격을 띠고 Accreditation에 관여하여 좌충우돌하며

자기 대학의 이익을 옹호하였던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Samuel P. Capen의 自律的 評價에 대한 「七惡說」(Seven Devils in Exchange for One)은 당시 대학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켜 자율적 평가의 暗影的 존재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대학의 자율적 평가에 있어서 이와 같은 限界와 制限點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이에 대한 극복은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基準」(Standards, Criteria or Essentials)의 설정과 「自體研究」(Self Study)가 관건이다. 대학은 학문연구를 통한 진리탐구로써 研究理念을 구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숙명적 존재로, 이 문제 역시 探究로 귀결되는 문제이다. 基準은 대학의 수준과 탁월성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척도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대학의 資質과 效用성을 평가하기 위한 研究結果의 生產物이라 할 수 있다. 이 基準 設定은 막연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國家와 大學社會가 지향하는 大學教育의 理念의in 目的에서 유연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각 대학이 지향할 大學別 基準이 설정된다고 할 수 있다.

기준설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자율적 평가 기구인 각 資質判定 機構(Accrediting Agencies)들이다. 여기에서 많은 論議와 研究를 거쳐 적합한 수준의 기준이 설정되면 회원대학들이 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시대적 배경과 회원대학의 실정을 기반으로 적당한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여 實現 가능성 있는 有用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일단 설정한 기준은 固定不變한 것이 아니라, 몇 년간의 주기를 두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또 다시 새로운 기준에 도전하여 대학의 質的 向上은 계속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학은 사회와 시대 변천에 적응한 大學理念을 구현하기 위한 대학의 適應性과 奉仕精神의 理念을 실현할 수 있는 機能을 包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학의 자율적 평가의 또 다른 관건은 「自體研究」와 이 결과를 추적 확인하는 「自體評價」라 할 수 있다. 원래 自體研究가 대학발전의 研究方法으로 창안된 것은 1701년 Yale 大學에서 있

지만 약 30년 전부터는 Accreditation에서 이 自體研究方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대학발전 계획에 많은 공헌을 하여 왔다. 이 自體研究는 대학의 哲學的 論究(philosophical consideration)과 대학의 目的, 그리고 教育課程 개발과 財政 등에 걸쳐 민주적인 集團思考 과정을 통한 목적 달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意思決定 체제이기 때문에 교수진, 행정직원, 이사회, 학생, 동문, 기타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한 集團研究體制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는 민주주의를 원리로 하는 知性을 집합하는 探究神神이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대학의 質提高의 대학 資質判定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가를 받을 시기가 되면 그동안 대학이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自體研究와 이에 대한 실제적인 評價結果의 실적을 「自體研究報告書」(Self Study Report)로 제출하여 대학의 評價를 받게 된다. 대학의 자율적 평가의 成敗는 그 맹점과 그 제한점을 극복하는 集團思考를 통한 「基準設定」과 「自體研究」를 어떠한 次元에서 이룩하느냐에 따라 大學像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자율적 평가의 문제도 學問의 自由理念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지 않는 한 “관리인의 관리를 누가 평가하느냐”의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된다면 대학은 統制와 集權을 자초하게 되고 대학의 自律的 評價는 물론, 大學의 自治는 어렵게 된다.

이상에서窺知할 수 있는 것은 大學의 自治와 自律的 評價는 基礎 없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基底는 대학이 추구해야 할 學問研究 理念의 實現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이념은 오늘날 普遍化된 大學의 三大理念 가운데 여타의 이념을 先導調整하는 핵심적 이념으로 探究精神이 그 바탕이 된다. 그런데 이 探究의 過程은 絶對的으로 學問의 自由를 필요로 하며 이 자유 없이는 探究는 불가능하다. 이때의 자유는 眞理를 추구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힘의 配分上의 자유인 liberty가 아니라, 眞理의 法則에 따른 자유이므로 孤獨한 自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는 絶對的 自由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학은 이에 照明한 學問의 自由를 주장할 것이다. 그에야만 眞理의 生産이 가능하며, 따라서 教授의 自由(teaching freedom)와 學習의 自由(learning freedom)를 누려서 學問研究의 理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참다운 大學의 自律性이 발현될 것이며, 이어서 大學의 自律의 評價와 大學의 自治, 나아가 大學의 自由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學問의 自由, 大學의 自律, 大學의 自治는 궁극적으로 大學의 自由를 뜻하며, 이들은 대학의 垂直的 理念인 研究理念의 실현을 先行條件으로 하는 대학의 特權이다.

이상과 같은 論究에 비추어 볼 때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出帆은 韓國 大學史上 그 意義가 자못 크다. 더구나 韓國의 近代的 大學이 시작된 지 約 半世紀의 年輪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참다운 大學自治의 產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